

제19절 개인에 대한 원칙: 자연적 의무

1 모든 책무는 공정성의 원칙에 의해 설명이 된다. 그런데 공정성의 원칙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되는 자연적 의무들이 있다. 나는 그것들을 한 가지 원칙 아래 귀속시키려 하지는 않겠다.

자연적 의무의 예:

① 자신에게 지나친 손실의 위험만 없다면 공평하고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도와야 할 의무 (적극적 의무),

② 타인을 해치거나 상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지 않을 의무(소극적 의무)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의 구분은 우선성 문제와 관련해서만 중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적극적인 의무보다는 소극적인 의무에 더 큰 비중이 있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51절~52절에서 다룸)

2 cf 책무와의 비교,

① 책무: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 적용된다.

자연적 의무 : 계약이나 취임 등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잔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꼭 약속하지 않아도 잔인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② 책무: 제도상의 관계에 따라 의무가 할당된다.

자연적 의무 : 제도상의 관계에 상관없이 동등한 도덕적 인격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성립한다. 국제법은 이와 같은 자연적 의무 원칙의 확장이다.

3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자연적 의무는 “정의로운 현행 제도를 지지하고 따를 의무”다. 아직 완전히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에는 정의로운 체계를 세워 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한다. 원초적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자연적 의무를 함의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초적 상황의 사람들은 잘 만든 질서정연한 사회가 때때로 여러가지 힘에 의해서 질서정연함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질서정연함에서 이탈하는 경우 그 이탈을 가속화하거나 영속화하는 방향으로 의무를 체계를 함의하리라 생각하기 어렵고, 당연히 그 이탈을 제거하고 정의로운 상태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적 의무를 지닌다는 점에 함의할 것이다. 즉, 사회적 관계와 상관없이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 지지하고, 그것에 이탈되었을 때 다시 복원시키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자연적 의무를 함의할 것이다.)

그래서 자연적 의무는 말로 약속하거나 어떤 보증을 하거나 계약을 맺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자연적 의무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의론에서 개인의 의무를 도출하는 것에는 “실제의 합의나 의제되는 합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약속이라는 행위 약속 관행의 배경적 맥락에서 떼어놓고는 그 자체는 아무런 의무를 도출하는 힘을 갖지 않는다. 조폭이 서로 약속한다고 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도덕적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책무 발생 요건에 자발적 행위가 들어가는 이유는 사회계약이론이 원래 “약속”이라는 행위 자체를 엄청 중요시 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특정한 사회적 관계, 즉 제도가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며(A)” “그 체제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기회를 이용한다(B)”는 책무의 발생요건 중에 (B)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정의로운 체제의 기회를 이용해 놓고, 그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 기생충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야 의무가 발생한다는 왈쩌류의 논변과는 다르다.

4 따라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자연적 의무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적용을 허용한다는 점에 모순점이 있거나 놀라운 점은 전혀 없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자연적 의무를 합의하지, 조건적으로 적용되는 자연적 의무를 합의할 리가 없음만 보여주면 된다. (예를 들어 잔인하지 않을 의무를 조건적으로 적용시킨다고 할 때, “아, 이제 나는 잔인해지지 않겠어”라고 공공방송에서 약속하거나 “아, 이 사업장에서 나는 잔인해지지 않겠어”라고 꼭 계약을 해야만 그런 의무가 생겨나는 사회를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이 합의할 리가 없다. 이 경우 공식적인 제도적 사회적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제도의 이익을 얻지 않는 대신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범죄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정성의 원칙은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혹은 그 체제 내에서 자신의 목표를 증진해온 보다 나은 사람들에게만 구속력을 갖는다. 그래서 귀족에게는 귀족으로서 의무가 있다(noblesse oblige)는 달리 해석하면 보다 많은 (제도적)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의로운 체제에 보다 강하게 결속되어야 하는 책무를 갖게끔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직자 재산공개가 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재산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공직자는 제도적 위치에서 동료 시민들의 처지에 막대한 영향력과 결정권을 갖고 있으므로 그 재산의 보유 정도와 재산축적의 과정에 대해 공개를 해야 할 책무를 갖게 된다. 공직에 취임하지 않으면 그런 제도적 위치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가 그 체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제도의 기회와 이익을 활용하지 않은 셈이 되므로 재산을 공개하고 말고 할 부분 같은 것은 없는 셈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자연적 의무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거나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것은 도덕적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나름의 결정권과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기본구조 자체 속에는 모두가 들어가게 되므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6 실존적으로 가능한 행위 중에서 책무와 자연적 의무의 부분을 공제하면, 허용가능한 행위의 영역이 남는다. 즉, 책무와 자연적 의무에 위배되지 않으면 해도 되는 것이다. 스케일링을 하는 따위의 일이 그렇다. 또는 영화를 보는 일이 그렇다. (그러나 엄청나게 비싼 요트를 타고 다니는 행위는 “지나친 손실의 위험이 없다면 궁핍한 타인을 도와야 할 자연적 의무”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별다른 즐거움을 주지 않는 곳에 돈을 함부로 쓰는 행위는 명백히 자연적 의무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강박적으로 경매에 매달리면서 계속해서 돈을 잃는 것은, 설사 그 돈이 여윳돈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그 돈으로 아프리카 빈곤국가의 세계동료시민을 위해 기부해야 한다.)

물론 의무 이상의 행위와 같은 흥미로운 것들도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의무나 책무는 아니다. 예를 들어 군사독재시절에 노골적인 탄압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면에 나서서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것이나 전 재산을 모두 빈민을 위해 기부하고 스스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일이다. 여기에는 그에 합당한 명예가 주어져야 하지만 의무로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비교적 쉽사리 헤낼 수 있는 일로 큰 선을 이룩할 수

있다면 꼭 그 일을 해야 할 자연적 의무를 갖지만 우리 자신에게 대단한 희생이 요구될 경우에 정의의 원칙에서 그것을 의무로서 부과할 논증을 찾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겨울에 길을 걸어가다 노숙자가 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것은 자연적 의무다. 또는 10명의 목숨을 폭발 정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은 매우 강력하게 요청되는 자연적 의무다. 그러나 10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의무이상의 행위다.)

고전적 공리주의 입장은 의무이상의 행위라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자가 입는 손실보다 그 행위로 인해 생기는 이득이 큰 경우에는 무조건 의무사항이 된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과 10명의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것은 의무 위배다. 10명의 삶은 1명의 삶보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우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에서는 도덕적 의미에서 자연적 의무와 책무 사이의 구분도 없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회 제도는 어떤 본분을 할당하기보다는 어떤 제도적 위치에 있든 없든 간에 사회의 평균 공리를 극대화하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자연적 의무, 책무, 의무이상의 행위를 설명하는 틀로서도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우리에게 더 좋은 해석과 지침을 안겨준다.